

2022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2. 4.

ITP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선정절차 2

제3장 채용 8

제4장 지원내용 9

[서식 및 별첨]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내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지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전담기관의 운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기업에 근로자를 연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 ②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공고·선정·관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말한다.
- ③ “주관기업”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써 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⑤ “장려금”라 함은 주관기업이 지원받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추진근거)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③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2장 선정절차

제4조(사업 추진 체계) 지원사업의 신청·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이다.

㉑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주관기업 →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뿌리기업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㉒ 신청서 검토 및 기업 선정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자격검증 - 평가를 통한 최종선정 - 최종선정 기업 통보
↓	
㉓ 근로자 신규 채용	
참여근로자 ↔ 주관기업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침에 정의된 참여근로자 채용 - 전담기관에 채용통보 및 약정체결
↓	
㉔ 장려금 신청	
주관기업 →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대상자 1개월 만근 후 신청 - 1~3개월 및 5개월차 신청
↓	
㉕ 신청서 검토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근로자의 재직현황 확인 및 중복지원 여부 등 장려금 지급 요건 확인 - 구비서류 보완 요청 시 기업은 10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㉖ 승인여부 통보 및 장려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이 결정된 기업에 1개월 이내 지급완료 - (채용인원 1명당) 월 200만원 x 3개월간 지급 - 5개월 만근시 추가 인센티브 100만원 지급
↓	
㉗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장려금 환수 - 기타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및 법적제재 - 사업기간 완료 후 연 1회 정기점검 (최대 3년)

제5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반영된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공고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공고내용을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접수)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서식 1]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및 [서식 3]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격 체크리스트’에 지정된 제출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체크리스트 1부
2.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9, ‘20, ‘21)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 예시) 19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19.12.31 ~ 2019.12.31’ 로 한다.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표준재무제표(‘19, ‘20, ‘21) 각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8년, 19년, 20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선택) 현장평가 가점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전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③ 전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서(고용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보완

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업의 자격) 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로 두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별첨 1]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에 포함되는 뿌리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② 제1항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자는 18년, 19년, 20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2. [고용 성장율]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3. [성장 산업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반도체, 항공, 바이오, 로봇 분야 뿌리기업
4. [기업 인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업

③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5.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7. ‘2022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뿌리산업 선도 모듈형 기업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8. 결산일 기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9.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0.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1.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자격심사) ①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지원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지표에 부합할 시 통과처리 한다.

② 자격심사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심사	성장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이라도 해당하면 적합 - 매출액 증소율 :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 증가율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이상 증가한 기업 - 성장산업군 : 항공(업종 분류번호 313으로 시작), 반도체(업종 분류번호 261으로 시작 또는 29271), 바이오(업종 분류번호 20495), 로봇(업종 분류번호 29280) 	적/부
	뿌리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이라도 해당하면 적합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업종분류 번호 	적/부
	상시 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합 - 2021년 12월 31일 고용보험사업장 가자격 취득자 명부 기준 	적/부
	기업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이면 적합 	적/부
	국세 및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4대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제9조(서류평가) ① 전담기관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항목은 0점 처리 한다.

③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60점 이상 기업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득점
근로 복지 부분 (45)	고용 안정 (25)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2021년 12월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인원 중 가장 최근 입사자 2인 	이행-15점, 위반-탈락			
		장기 근속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이하	
	복리 후생 (20)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 - 2021년 교육훈련 관련 자료 	실시-10점, 미실시-0점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 - 복지시설 사진 또는 영상 (화장실 제외) 	3개 이상	2개	1개	
				10점	7점	4점	
기술 역량 부분 (35)	뿌리 기술 (25)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증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5점, 무-0점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산업 관련 연구소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 INO-BIZ(기술혁신형)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0점, 무-0점			
	품질 인증 (10)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 관련 인증 보유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인증 -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보유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3개 이상	2개	1개	
				10점	7점	4점	
경영 부분 (20)	성장성 (20)	고용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2020년 12월 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대비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이하	
		매출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대비 최근년도 매출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자료(이익계산서) 기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이하	
				10점	7점	4점	
가점(6) (중복가능)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가점 :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2020~2021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가점 : 3점			
합 계				100점 (가점 6점)			

제10조(심의평가) ① 전담기관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심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경영·고용·기술 등 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5인 이내)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산술평균 60점 이상 기업을 최종선정 한다.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정성평가 (100)	일자리 평가	■ 신규채용의 필요성 - 신규채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한 내용 평가 (0~25)	25	
		■ 인력 활용의 적정성 - 참여근로자의 업무수행 구체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의 적합여부 평가 (0~25)	25	
		■ 일자리 지속성 -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수준, 일 생활균형 등 고용유지노력 평가 (0~25)	25	
	성장 가능성	■ 기업의 성장가능성 -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성장성 (0~25)	25	
총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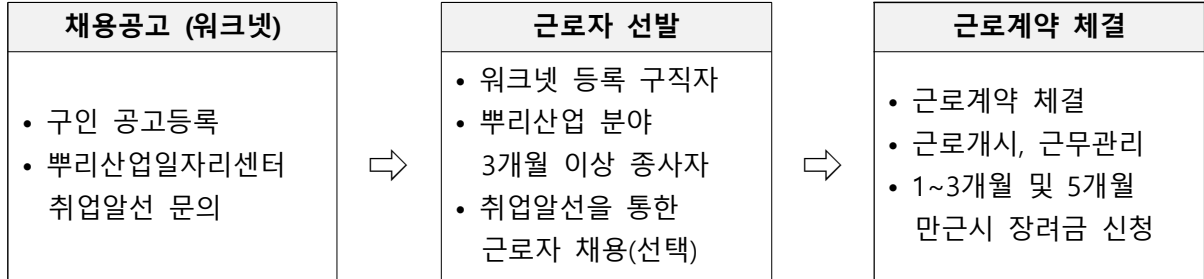
제11조(주관기업 선정) ① 평가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고용계획서 보완 및 지원금 조정 등을 하여 주관기업 및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전담기관은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에게 통보하고 장려금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결과의 통보 이후 신규채용 위한 일체의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선정된 주관기업의 사업포기 및 기타 지원 제외사항 발생 시 후보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은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최소 1명 이상의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④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는 주관기업은 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⑤ 장려금 지원사업의 채용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3장 채용

제12조(참여근로자 자격)

- ① 최종 선정된 주관기업은 ‘참여근로자’ 를 채용하여야 한다. ‘참여근로자’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서비스 등록자(워크넷 등록 구직자 및 재직자)로서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
 2.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3.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4. 참여근로자의 근로경력은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장만 인정한다.
 5. 뿌리산업분야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표기된 사업장 중 업종분류코드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인정한다.
 6. 그 외 뿌리산업분야 증빙은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 근로자로 고

용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13조(참여근로자 제외) 참여근로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③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④ ‘참여근로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제14조(채용통보 및 약정) ① 주관기업은 신규채용 이후 전담기관에 [서식6]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채용통보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의 채용대상자가 참여근로자 조건에 부합할 시 [서식9]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서’를 활용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 ③ 주관기업은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지 후 재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제4장 지원 내용

제15조(지원 범위) ① 주관기업당 최대 3명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 ② 신규 참여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며 5개월 만근 시 추가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 ③ 장려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 한도(총 3명)인원에 포함한다.
- ④ 참여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채용은 당초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2주 전·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대체채용은 지원한도 인원 1명당 1회에 한함.
- ⑤ 참여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대체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

- A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을 경과 하였으나 2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 → 지원금은 1회차 만 신청가능
- A근로자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 대체근로자 B가 입사하고 입사일로부터 1개월 근무(만근)하는 경우 → 2회차 지원금 신청가능
- A근로자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한도인원을 차감함 (대체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16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3개월 및 5개월 만근 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예정)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청 건은 2023년도 사업비 편성 후 사후 지급한다.
- ④ 참여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거나 해당기업의 동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36개월)한다.

제17조(지급기한 및 방법) ①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매월 서류제출 완료 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개월 이내 장려금을 지급한다.

- ② 구비서류 보완요청 시 주관기업은 1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③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가능)

제18조(중복지원 제한) ① 지원사업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주관기업이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다.

- ②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9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대 3년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②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명부, 신규채용근로자 퇴사사유, 기업매출액, 만족도 조사 등 필요서류 제출 및 점검에 응해야한다.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서식 및 별첨

[서식1]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3
[서식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14
[서식3]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격 체크리스트	16
[서식4] 기업정보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7
[서식5]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18
[서식6]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채용통보서	19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20
[서식8] 인권존중의무 서약서	21
[서식9]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서	22
[서식10]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내역확인서	25
[서식11]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퇴사 통보서	26
[서식1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사직서	27
[서식13]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자격 및 서류평가표	28
[서식14]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심의평가표	29
[별첨 1]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제출서류표	30
[별첨 2]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31

「202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기업현황	주요 사업내용	(생산품, 서비스 등 간략히)		
	매출액 (2021년)	백만원	전체 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명
	매출 증가율 (전년대비)	%	고용 증가율 (전년대비)	%
	교육훈련 여부 (2021년)	건	장기근속자 비율 (3년 이상)	%
	복지시설 개수	개	최저임금 준수	(예/아니오)
<p>* 매출액증가율 = (2021년 매출액-2020년 매출액)/2020년 매출액*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p> <p>* 고용증가율 = (2021년 12월 고용보험가입자-2020년 12월 고용보험가입자)/2020년 고용보험가입자*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p> <p>* 장기근속자 비율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2021년 12월 고용보험가입자)*100</p> <p>* 교육훈련 : 2021년 법정 의무교육 포함 모든 외부교육 인정</p> <p>* 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은 반드시 증빙자료(사진, 문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점수로 인정</p> <p>* 복지시설 :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등</p> <p>* 최저임금 준수 : 최근 채용인원 2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p>				
기술현황	핵심기술 보유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업확인서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 보유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연구조합 <input type="checkbox"/> INO-BIZ(기술혁신형)기업		
	품질 인증 보유	(ISO, KS, 6시그마)		
<p>* 핵심기술보유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p> <p>* 연구소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INO-BIZ(기술혁신형) 인증</p> <p>* 품질관련 인증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 인증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보유</p>				
신청 배경 및 필요성	<p>※ 신규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p>			

<p>직무수행 계획 (신규채용자)</p>	<p>※ 예) 라인증설에 따른 조립원 채용으로 야간 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수행할 예정</p>	
<p>신규채용자 요구 전문성 (직무수행 관련 자격사항)</p>	<p>※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필수사항 대한 서술</p>	
<p>근로환경 (복지시설 사진)</p>		
<p>신규채용근로자 근무지(예정) 장소 사진 ※ 업무공간, 사업장 외부 전경 등</p>		

【서식 3】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성장장려금 지급을 위해선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체크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해당 시 지원지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임금 체불 중 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6개월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 ※ 신규채용인원의 재입사는 6개월 이후만 인정		
3.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 채용 등의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4.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된 사업장이며 성장기업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운영지침 4p 참고		
■ 근로자 요건		
1. 참여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입니다.		
2. 참여근로자는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입니다.		
3. 참여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참여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참여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시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사업장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1. 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참여 : 접수/지원 등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기업정보 항목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제3자 (제공 기관)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본원 업무 관련
제공하는 기업정보 항목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 공장등록증 등 사업 참여 신청을 목적으로 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3년 간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수집 동의 거부권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등 사업의 신청, 수혜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 정보 및 창·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2조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운영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202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채용통보서

참여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총괄담당자	
	소재지주소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근로자 인정기준	워크넷 등록 구직자 중 뿌리산업분야 3개월 이상 종사자 (5년이내) ※ 뿌리산업분야 증빙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순번	신규채용자	채용일	뿌리산업경력 (5년 이내)	전직장명 (뿌리산업분야)	전직장 지역	전직장 업종	전직장 직무
1	홍길동	5월 10일	11개월	(주)뿌리전자	인천 남구	도금업	도금원
2	고길동	5월 25일	7개월	뿌리테크	인천 부평구	반도체 부품제조	조립원
3							
4							

상기 내용대로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대상에 대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 이력확인서 (경력증빙용)
2. 신청대상 근로계약서 사본
3. 신청대상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서식7]
4. 워크넷 구인공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 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력서(취업자 경력조사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사업종료 후 3년간 정보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본원 및 운영기관(취업지원 운영기관 포함) 업무 관련

2.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본원 및 운영기관(취업지원 운영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본원 및 운영기관(취업지원 운영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항~4항의 내용에 따른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정부, 인천광역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천테크노파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서

제1조(목적)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와 참여기업 _____(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간에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참여근로자 지원내용) “운영기관” 이 “참여기업” 에게 참여근로자 1인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장려금 지원	참여근로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 + 5개월 만근 시 추가 지원	월 2,000,000원 (1~3개월) 추가 1,000,000원 (5개월 만근시)

※ 지원 기간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

제3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① “참여기업” 은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시 관련사항을 “운영기관” 에게 통보해야하며, “운영기관” 은 변경된 내용이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사업참여를 유보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 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근태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기업” 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은 “참여기업” 에게 약정기간 동안 참여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1인당 월2,000,000원(최대 3개월)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 은 근무 중인 참여근로자에 대한 “운영기관” 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지원금 신청 시 급여대장 및 임금 증 사본 등 필요 제반서류를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 은 “참여기업” 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참여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근로자 임금 편취 포함)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참여기업”은 근무 중인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참여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기업”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에서 신규채용한 참여근로자에 대한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참여기업”은 사업에 참여중인 참여근로자를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인건비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지원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해야 하고,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해지 등) “참여기업”은 장려금사업 종료이전에 중도해지(퇴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근로자 채용)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뿌리기업 성장 장려금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근로자 근태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는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3조(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부정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1.01.01.) 및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지침 및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운영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직인

참여기업) *사업자명* *대표자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202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내역 확인서

기업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총괄담당자	
	소재지주소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지급 내용	해당근로자			
	지급 금액			

상세 지급 내역(예시)

(단위 : 만원)

해당 근로자	'22년 6월	'22년 7월	'22년 8월	합 계
박○○	200	200	200	600
박○○	-	200	-	200
배○○	-	200	200	400
김○○	-	-	-	-
합 계	200	600	400	1,200

상기 내용대로 해당 업체에게 뿌리기업 성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202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퇴사통보서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퇴사개요				
성명		퇴사 사유	<input type="checkbox"/> 업체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 사유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근태불량 <input type="checkbox"/> 적성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업무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근무환경불만 <input type="checkbox"/> 원거리출퇴근 <input type="checkbox"/> 노동강도 <input type="checkbox"/> 임금문제 <input type="checkbox"/>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				

※ 사직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첨부 필수

위와 같이 근로자 퇴사를 통보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참여근로자 사직서 [서식12] 1부
2. 고용보험상실신고서 1부(14일 이내 추후 제출가능)

「202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사직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사업명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근로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중도포기 사유 (O표시, 기타사유는 별도 작성)	타기업취업		군입대	
	진학 등 자기개발		결혼 또는 출산	
	기타사유			

「2022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참여 종료 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여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자격심사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 여부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여부
1	성장사업군		O X	4	기업소재지		O X
	매출액 증가율			6	기업규모		O X
	고용 증가율			7	국세, 지방세 완납		O X
2	뿌리기업 확인		O X	8	4대보험 완납		O X
3	상시근로자수		O X				
자격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

□ 서류평가(자격심사 적합 시 서류평가 진행)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특점
근로복지 부분 (45)	고용 안정 (25)	임금수준	■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사업장 취업자 명부 인원 중 가장 최근 입사자 2인	이행-15점, 위반-탈락			
		장기 근속율	■ 3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10% 이상 10점	6%이상~ 10%미만 7점	6% 미만 4점	
	복지 후생 (20)	교육·훈련	■ 법정무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 - 2021년 교육훈련 관련 자료	실시-10점, 미실시-0점			
		복지시설	■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 - 복지시설 사진 또는 영상 (화장실 제외)	3개 이상 10점	2개 7점	1개 4점	
기술역량 부분 (35)	뿌리 기술 (25)	핵심기술	■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증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5점, 무-0점			
		기술개발	■ 뿌리산업 관련 연구소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 INO-BIZ(기술혁신형)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0점, 무-0점			
	품질 인증 (10)	품질관리	■ 품질 관련 인증 보유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시스템인증 -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보유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3개 이상 10점	2개 7점	1개 4점	
경영 부분 (20)	성장성 (20)	고용 증가율	■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2020년 12월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대비 2021년 12월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10% 이상 10점	6%이상~ 10%미만 7점	6% 미만 4점	
		매출 증가율	■ 전년 대비 최근년도 매출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자료(이익계산서) 기준	10% 이상 10점	6%이상~ 10%미만 7점	6% 미만 4점	
가점(6) (중복가능)		우수기업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가점 : 3점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2020~2021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가점 : 3점			
합 계		106점 (가점 6점포함)					

【서식 14】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심의평가표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심의평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정성평가 (100)	일자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의 필요성 - 신규채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한 내용 평가 (0~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활용의 적정성 - 참여근로자의 업무수행 구체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의 적합여부 평가 (0~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지속성 -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수준, 일 생활균형 등 고용유지노력 평가 (0~25) 	25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성장가능성 -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성장성 (0~25) 	25	
총 평가점수			100	

평가의견	
------	--

심사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평가위원 : (서 명)

인천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제출서류표

항 목	기 준	
	지원사업 신청 시	장려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고용계획서 [서식2] (관련 증빙서류 포함) ③ 체크리스트 [서식3] ④ 기업정보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서식4] ⑤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채용인원) ⑥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2019, 2020, 2021) 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 ⑨ 2021년 기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제외) ⑩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⑪ 뿌리기업 증빙서류 ⑫ 가점 해당서류	① 지급신청서 [서식5] ② 채용통보서 [서식6]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7] ④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신규채용자)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⑥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채용자) ⑦ 출근부, 급여이체확인증 (신규채용자) ⑧ 기업통장 사본
	※ 지급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장려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는 반드시 신규채용근로자가 포함 ※ 통장사본 : 기업통장사본(법인통장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이외 통장사본은 사용불가	

【별첨 2】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제조업
	24311	선철주물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업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7. 사출·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가공기
	29221102	방전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1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